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
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'93. 7. 8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3. 6. 11. 마포구청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'93. 6. 28
 - 다. 상정일자 : 제17회임사회 제2차위원회('93. 7. 8.) 상정, 심사,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석봉)
 - 가. 제안이유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함.
 - 나. 주요골자
의회사무국 속기사(별정직 7급상당-9급상당)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<별표 1>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동 조례(안)은 속기사란을 신설하여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마포구의회사무국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
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1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3. 6. 11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자치구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함.

2. 개정주요골자
자치구 의회사무국 속기사(별정직7급상당-9급상당)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<별표 1>
3. 개정근거
지방공무원법 제2조
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<별표 1>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
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별표 1>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중 7. 구의회 관련분야중 구의회전문위원란 다음에 속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속기사	7급상당	회의록작성 및 편집	1.한글속기 1급자격중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2.별정직8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
	8급상당	회의록작성 및 편집	1.한글속기 1급자격중 소지자 2.한글속기 2급자격중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3.별정직9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
	9급상당	회의록작성 및 편집	1.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중 소지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(안)			
7. 구의회 관련분야				7. 구의회 관련분야			
직명(위)및 업무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용자격	직명(위)및 업무구분	직급	직무 내용	임용자격
구 의 회 전문위원		(생 략)		구 의 회 전문위원		(현행과 같음)	
		[신 설]		속기사	7급 상당	회의 록작 성및 편집	1. 한글속기 1급자 격중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자 2. 별정직 8급상당 으로 당해 분야 근 무경력 3년이상인 자
		[신 설]			8급 상당	회의 록작 성및 편집	1. 한글속기 1급자 격중 소지자 2. 한글속기 2급자 격중소지자로서 당 해분야 근무경력 2 년 이상인 자 3. 별정직 9급상당 으로 당해 분야 근 무경력 2년이상인 자
		[신 설]			9급 상당	회의 록작 성및 편집	1. 한글속기 2급이 상 자격중소지자